

# 변경대비표

## [집합투자규약]

1. 집합투자기구 : NH-Amundi 퇴직연금 중소형주 증권 자(子)투자신탁 1 호[채권혼합]
2. 효력발생일 : 2022년 5월 25일
3. 정정사유
  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(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)
  - 적용 법률 변경, 용어 및 문구 변경 등 (재무상태표 등)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법 용어의 변경 (공통)	대차대조표 제X 영업일	재무상태표 X 영업일
제3조(집합투자기구 의 명칭 및 종류 등)	①~④ (생략) <u>⑤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 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 며,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</u>	①~④ (현행과 동일) <u>⑤ 제4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 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특정 종류의 수익증 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 호 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u>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 무)	① (생략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이를 관 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 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 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 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  ③ (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이를 관 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 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 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 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 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</u>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  ③ (현행과 동일)
제9조(수익권의 분 할)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의 종류별 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종의 수 익증권으로 표시한다.	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의 종류별 로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종의 수 익증권으로 발행한다.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수익증권 발행가액</u>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 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 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</u> 전액이 납입된 경 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

	따른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	한다)에 따른 <u>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u>
제14조(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)	<p>제14조(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익자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</li> <li>2.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</li> </ol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<u>집합투자업자</u>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수익자명부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</u>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익자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</li> <li>2.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</li> </ol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<u>판매회사</u>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
제15조(자산운용자 시 등)	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 할 수 있다.</p> <p>1~2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 할 수 있다.</p> <p>1~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</p>
제28조(환매연기)	①~⑦ (생략)	①~⑦ (현행과 동일)

	<p>⑧ 제3항,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<u>예탁결제원</u>에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⑧ 제3항,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위탁할 수 있다.</p>
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 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계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에서 부채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 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계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에서 부채총액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
제32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대차대조표</u></li> <li>2. 손익계산서</li> <li>3. 자산운용보고서</li> </ol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재무상태표</u></li> <li>2. 손익계산서</li> <li>3. 자산운용보고서</li> </ol>
제35조(상환금 등의 지급)	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
제39조(보수)	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(3)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를 매일 <u>대차대조표</u>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~3. (생략)</p>	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(3)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를 매일 <u>재무상태표</u>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~3. (현행과 동일)</p>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	<p>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~4. (생략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	<p>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~4.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별 제6조제6항</u>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

	<p>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
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 <p>3~5. (생략)</p> <p>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</u> 또는 <u>전자우편</u>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동일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<u>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</u>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p> <p>3~5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</u>, <u>전자우편</u> 또는 이와 비슷한 <u>전자통신</u>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p>
부칙		(변경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 변경대비표

## 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: NH-Amundi 퇴직연금 중소형주 증권 자(子)투자신탁 1호[채권혼합]

2. 효력발생일 : 2022년 5월 25일

3. 정정사유

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
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사항 반영(8.78% → 8.89%, 4 등급 유지)
- 자본시장법,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(금전차입 제한 예외 조항 추가 등)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1.05.07) 반영
- 적용 법률 변경, 용어 및 문구 변경 등 (재무상태표 등)
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법 용어의 변경 (공통)	대차대조표 제X 영업일	재무상태표 X 영업일
[요약정보]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* 투자비용 -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<u>총보수 및 비용</u> - 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 간별 <u>총보수·비용</u> 예시 (단위 : 천원)	* 투자비용 -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<u>합성 총보수 및 비용</u> - 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 간별 <u>합성 총보수·비용</u> 예시 (단위 : 천원) - 최근 결산일 기준 업데이트  * 투자실적추이/운용전문인력 - 작성기준일 기준 업데이트
제1부. 2.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형태	가~마. (생략) <신설>	가~마. (현행과 동일) 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여부: 해당사항 없음
제2부. 5. 운용전문 인력		운용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 등 작성기준일 기준 업데이트
제2부. 8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– NH-Amundi 중기채 형 증권 모투자신탁 1호[채권] ③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 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 에 따라 발행 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	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– NH-Amundi 중기채 형 증권 모투자신탁 1호[채권] ③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 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
	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– NH-Amundi 중소형 주 증권 모투자신탁 1호[주식]	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– NH-Amundi 중소형 주 증권 모투자신탁 1호[주식]

	<p><b>④자산유동화증권</b>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 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	<p><b>④자산유동화증권</b>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 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
제2부. 8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<p>2. 금전의 차입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(1)~(2)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2. 금전의 차입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(1)~(2) (현행과 동일)</p> <p>(3)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</p>
	<p>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NH-Amundi 중기채형 증권 모투자신탁 1호 [채권]</li> <li>- NH-Amundi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 1호 [주식]</li> </ul> <p>2. 동일종목 투자제한</p> <p>나.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p> <p>(1)~(5) (생략)</p> <p>(6)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.)</p> <p>6. 금전의 차입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가~나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NH-Amundi 중기채형 증권 모투자신탁 1호 [채권]</li> <li>- NH-Amundi 중소형주 증권 모투자신탁 1호 [주식]</li> </ul> <p>2. 동일종목 투자제한</p> <p>나.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p> <p>(1)~(5) (현행과 동일)</p> <p>(6)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.)</p> <p>6. 금전의 차입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가~나. (생략)</p> <p>다.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</p>

		<u>로서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</u>
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<p>다. 기타 투자위험 해지 위험</p> <p>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(의무 해지)</p> <p>1~4. (생략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</p>	<p>다. 기타 투자위험 해지 위험</p> <p>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(의무 해지)</p> <p>1~4.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 시행령 제224조의2</u>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</p>
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<u>8.78%</u>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p>	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<u>8.89%</u>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</p>
제2부.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u>대차대조표</u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합니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	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u>재무상태표</u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합니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	최근 결산일 기준 업데이트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		최근 결산일 및 작성기준일 기준 업데이트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	작성기준일 기준 운용규모 업데이트
제5부.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등	<p>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</p> <p>① 수익자총회의 소집</p> <p>-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예탁결제원</u>에 위탁하여야 하며, <u>예탁결제원</u>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</p> <p>① 수익자총회의 소집</p> <p>-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위탁하여야 하며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</p> <p>-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<u>법시행규칙 제20조</u>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</p>

		<u>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.</u>
제5부. 2. 집합투자 기구의 해지에 관 한 사항	<p>가. 의무해지 (생략)</p> <p>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나. 임의해지 (생략)</p> <p>-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(50억 미만)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,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	<p>가. 의무해지 (현행과 동일)</p> <p>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나. 임의해지 (현행과 동일)</p> <p>-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(50억 미만)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,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
제5부. 3. 집합투자 기구의 공시에 관 한 사항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(생략)</p> <p>[결산서류]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</p> <p>1) <u>대차대조표</u></p> <p>2) 손익계산서</p> <p>3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</u> 또는 <u>전자우편</u>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/p> <p>-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</u></p>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(현행과 동일)</p> <p>[결산서류]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</p> <p>1) <u>재무상태표</u></p> <p>2) 손익계산서</p> <p>3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</u>, <u>전자우편</u> 또는 <u>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</u>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/p> <p>-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</u></p>

	<p>사 또는 <u>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	<p><u>자동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
	<p>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,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</p> <p>1) (생략) 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(이하 생략)</p>	<p>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,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</p> <p>1) (현행과 동일) 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<u>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u>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
# 변경대비표

## 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: NH-Amundi 퇴직연금 중소형주 증권 자(子)투자신탁 1 호[채권혼합]
2. 효력발생일 : 2022년 5월 25일
3. 정정사유
 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운용실적 등 갱신
  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사항 반영(8.78% → 8.89%, 4 등급 유지)
 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1.05.07) 반영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[요약정보]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<p>* 투자비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<u>총보수 및 비용</u></li><li>- 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<u>총보수·비용</u> 예시 (단위 : 천원)</li></ul>	<p>* 투자비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<u>합성 총보수 및 비용</u></li><li>- 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<u>합성 총보수·비용</u> 예시 (단위 : 천원)</li><li>- 최근 결산일 기준 업데이트</li></ul> <p>* 투자실적추이/운용전문인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작성기준일 기준 업데이트</li></ul>